

2018 종교인소득 과세 준비자료

종교인소득 과세

한국교회 공동 매뉴얼(초판)

2017. 12. 29.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

본서의 저작권은 (사)한국교회법학회에 있으며 정부(기획재정부, 국세청)의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기본자료와 최근 입법예고되어 2017년 12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과 재입법안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서의 내용을 무단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서는 완벽한 매뉴얼이 아니며, 정부의 최종 과세 안내메뉴얼이 나오지 않아, 납세를 준비해야 할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자체적으로 준비할 최소한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서 내용에 대한 문의나 기타 연락은 (사)한국교회법학회(www.churchnlaw.co.kr, 1600-9830)로 하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머리말]

국회는 2015.12.2. 종교인소득 과세를 도입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고, 2017.12.26. 시행령 개정안과 재입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종교인소득 과세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종교인과세는 지난 50년 동안이나 종교계, 정부, 학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논의해 왔고 법제정 이후에도 2년이라는 준비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과세당국과 종교계가 진지하게 논의한 것이 불과 6개월이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준비 없이 졸속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그나마 기독교가 ‘종교인과세 공동 TF’를 구성하고 늦게나마 대처를 함으로써 종교인과세법의 독소조항으로 꼽히던 종교활동비 과세안을 바꾸어 비과세 항목으로 명시하고 이를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시행령개정안이 마련되었다.

다만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감안해서 기획재정부는 종교활동비 비과세원칙을 유지하되 종교활동비 중에서 종교단체가 공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지 않는 비용은 총액을 신고하도록 재수정 하였다. 종교활동비를 교회가 공적으로 관리를 하는 한, 비과세와 세무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 게 그나마 다행이다.

이제 공은 종교계로 넘어 왔다. 원천징수를 할 경우에는 당장 내년 1월부터 과세가 이루어지지만 개인소득신고를 할 경우에는 2019년 5월까지 신고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있다.

교회법학회는 지난 4개월간 ‘종교인과세 공동 TF’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논의하고 입수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종교인과세 매뉴얼을 만들었다. ‘법을 통해 한국 교회를 섬긴다’는 학회의 방침에 따라 이 매뉴얼이 필요한 교회와 목회자이면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 매뉴얼이 나오기 까지 수고해주시고 후원해주신 TF 관계자들과 교회연합기관, 교단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 매뉴얼은 교회나 목회자로 어떻게 하면 제대로 세금을 내어서, 세금으로 인해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2017. 12. 29.

편집대표 학회장 서헌제

[목 차]

머리말

I. 종교인소득 과세의 내용

1. 종교인소득 과세의 개요 -----	1
1-1. 개관	
1-2. 종교인소득 과세의 특징	
2. 종교인소득 구분 -----	2
2-1. 과세대상 소득	
2-2. 비과세소득	
2-3. 필요경비	
2-4. 징수세율	
2-5. 소득신고 선택	
3. 소득신고 및 납세 -----	9
3-1. 원천징수	
3-2.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	
3-3. 지급명세서 제출	
4. 세무조사 -----	12
4-1. 질문조사의 대상	
4-2. 종교활동비	
4-3. 수정신고	
5.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시기 -----	13
6.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	14
6-1. 근로장려세제	
6-2. 자녀장려세제	
7. 종교인소득 과세의 현실 -----	17
7-1. 세수 예상	
7-2. 면세점의 기준	

II. 종교인소득 과세를 위한 준비

1. 과세대상자 범위 -----	18
-------------------	----

1-1. 담임목사	
1-2. 부목사	
1-3. 전도사	
2. 신고소득 : 과세대상소득 -----	20
2-1. 소속 교회에서 받는 소득	
2-2. 소속교회 이외의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	
2-3. 종교단체 이외로부터 받는 소득	
2-4. 기부금 세액공제	
3. 소득신고와 납부 :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신고 -----	23
3-1. 교회 소속 목회자에 대한 원천징수 및 신고 납부	
3-2. 외부인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등에 대한 원천징수	
4. 교회정관과 재정·회계의 정비 -----	25
4-1. 고유번호증 부여	
4-2. 교회정관과 재정규칙의 정비	
4-3. 교회재정과 회계정비	
4-4. 목회활동비(종교활동비)	

III. 부록

부록 1. 종교인소득 과세 개요 -----	32
부록 2.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	33
부록 3. 종교인소득 세액 -----	43
<표 1>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	43
<표 2>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의 비교 -----	45
<표 3> 소득 수준별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 세액 비교 -----	45
부록 4. 종교인소득 과세에 대한 교회와 목회자의 준비 -----	46
<표 4> 과세 대상 종교인 범위 -----	46
<표 5> 과세와 비과세 소득 대비 -----	47
<표 6> 목회활동비(종교활동비)의 구분 -----	48
<표 7> 세무서 제출서류 : 교회와 목회자 -----	49
<표 8> 교회와 목회자 준비사항 목록표 -----	50
<표 9> 교회의 모범정관 및 재정운용규칙 -----	51
부록 5.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서식 -----	55

I. 종교인소득 과세의 내용

1. 종교인소득 과세의 개요

1-1. 개관

국회는 2015.12.2. 종교인소득 과세를 도입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통과시켰고, 2017.12.26. 시행령 개정안과 재입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종교인소득 과세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세대상 소득:** 종교단체에 소속된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예식 또는 종교 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으로 명시하고, 종교인소득 중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및 교통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였다.
- **납부방법:** 종교관련 종사자의 소득신고와 납세는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거나 종교인이 개인적으로 종합소득과세 표준신고하는 납부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소득신고 선택:** 종교인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거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거나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종교인이 종교인소득 신고를 해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대상이 된다.
- **질문조사권:**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시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시행시기:**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관련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1-2. 종교인소득 과세의 특징

종교인소득 과세는 이를 위한 특별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법 중의 일부

로 포함되어 있다.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하는 법으로서 소득의 유형을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여기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소득세법이 이렇게 소득을 구분하는 이유는 각 소득에 따라서 비과세항목이나 필요경비의 산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어 있다. 원래 기타소득이란 종합소득의 다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대개는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소득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사업조직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에 포함시킨 것은 근로소득으로 할 경우 종교인들이 근로자로 취급되는 데 대한 거부감을 고려하고 또 근로소득보다 필요경비 등을 많이 인정하여 조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종교인소득 과세와 근로소득 과세를 비교해보면, 종교인소득은 ①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세액 면에서 유리하고, ② 근로소득신고와 종교인소득신고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③ 세무신고 및 납세방법에 있어서도 원천징수와 개인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종교인소득의 구분

2-1. 과세대상 소득

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소득이다.

(1) 종교인

종교인이라고 함은 종교활동을 직업으로 하는 자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 종사자(248)’를 말하는데 기독교에서는 목회자로서의 목사와 전도사, 그 이외의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강도사가 있다.

목사(24811)는 “기독교종교예식이나 의식을 집행하고 관장하며 신자들에게 정신적, 도덕적 지도를 하는 사람으로 교리의 해설과 설교를 하며,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목사에는 담임목사, 원로목사, 부목사, 협동목사, 교목, 원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목사의 자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각 종교단체(교단)에 맡겨져 있고 이를 국가의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한편 전도사(24982)는 “교회에서 맡은 역할에 따라 청소년이나 신자들의 교육을 담당하거나, 찬양·율동·음악 등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교회사무직에 종사하는 관리집사, 기사 등은 종교인이 아니므로 이들은 종교인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과세 대상 종교인의 범위에 관해서는 <표 4> 과세 대상 종교인 범위 참조.

(2) 종교단체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그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한다. 여기에서 종교단체라고 함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단체”를 말한다.

종교단체의 형태로는 ①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③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단체)를 말한다.

기독교의 경우 종교단체에는 지교회가 대표적이지만 지교회의 상회인 노회와 총회도 종교단체이며 그 외에도 선교단체나 기도원에도 대표자가 있고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으면 종교단체에 포함된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교회는 비법인 사단으로 보고 있다. 종교단

체(교회)가 (비법인)사단이 되기 위해서는 단체로서의 규약(정관)을 갖추어야 하고 대표자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회가 사단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립교회이어야 할 필요도 없고 특정교단에 소속될 필요도 없으며 교회의 규모와는 상관이 없다.

한국교회는 법인으로 등기한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비법인사단의 형태로 존재한다. 교회(노회, 총회)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재산을 소유(총유)할 수 있으며, 교회명으로 소유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할 지위도 인정받는다. 교회의 소속 교인들은 사단의 구성원으로서 교회재산을 사용할 수 있지만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인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지교회 대표자는 담임목사이다. 담임목사는 지교회 교인들의 청빙과 소속교단(노회)의 위임을 거쳐 부임하지만 노회의 위임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지교회 대표성을 인정하고 있다.

(3) 종교활동

종교인소득은 종교활동으로 인한 소득이다. 무엇이 종교활동으로 인한 소득인지는 각 종교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기독교의 경우 목회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사례비(생활비)를 가리킨다. 그 명목은 사례비, 상여금, 수양비, 체력단련비, 연구비, 격려금, 교단 연금적립금, 의료비 등이 있다.

종교인소득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종교활동비(목회활동비)가 종교인 개인소득인가 아니면 종교단체의 공금인가 하는 것이다. 당초 기획재정부에서는 기독교 세부과세기준안을 만들어 목회자의 소득을 35가지로 세분하여 제시하였으나, 다른 종교와 조세형평성이 결여, 특정종교 탄압 등의 반발을 초래하였다.

특히 목회활동비 등 목회자의 목회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은 교회의 공금이고 목회자의 개인소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산처리, 즉 증빙자료에 의해 정산되지 않은 부분은 모두 목회자의 개인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반감을 초래하였다. 이에 기독교 등 종교단체가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자 타종교와 같이 종교인의 순수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종교활동비 등은 비과세로 하기로 하였다. 다만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종교활동비’란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말한다.

과세 대상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표 5> 과세와 비과세 소득 대비 참조.

2-2. 비과세소득

법 제12조(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아.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 2)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 3)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성질의 지급액
- 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5) 종교관련종사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비과세 소득이란 종교인이 받는 소득 중에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이다. 비과세 대상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표 5> 과세와 비과세 소득 대비 참조.

(1) 학자금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와 「평생교육법」

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등은 비과세 소득이다. 가령 교회가 소속 목회자에게 국내외를 막론하고 신학교 M Div. 과정 또는 신학 석.박사 과정의 등록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그 비용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교회가 신학이나 목회훈련과 관련이 없는 학자금의 지원, 가령 경영학석사(MBA)나 로스쿨 학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이 아니다. 나아가 최고경영자과정(AMP)과 같이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교육비의 지원도 비과세 소득이 아니다.

비과세 학자금은 본인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말하므로 본인이 아닌 사모나 자녀에 대한 학자금지원은 비과세 소득이 아니다.

(2) 식대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소속 종교단체가 제공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얼마가 되든 비과세 소득이다. 다만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매월 일정액을 식비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소득이고 그 이상의 지원은 과세 소득이다.

(3) 실비변상적 지급액

- **출장비, 여비 등:** 실비변상적 지급액이란 출장비, 여비와 같이 실제 사용한 액수를 정산해서 소속 종교단체가 변상해주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여비, 출장비등은 목회자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것에 한정되며 순전히 개인적인 목적의 여비 등을 교회가 지원하면 과세소득이 된다.
- **차량유지비:** 교회소유의 차량을 목회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상관없이 목회자 개인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종교단체의 종교관련 활동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종교단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소득이다.
- **종교활동비:**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즉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소득이다. 다만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 통장에 공적으로 관리 사용하지 아니하고 종교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종교인 개인통장으로 입금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에 그 금액을 기재하여야 비과세 소득이 된다.

(4) 보육비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이다.

(5) 사택사용이익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교관련종사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하여 종교관련종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의 사용이익은 비과세이다.

2-3. 필요경비

종교인 소득은 해당과세 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되는데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에서 비과세소득 금액을 공제한 금액 중 다음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령 87.3). 근로소득세와 종교인소득세가 차이가 나는 것은 종교인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근로소득에 비해 훨씬 더 많이 인정하기 때문이다.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	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600만원+(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60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4. 징수세율

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후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여기에 징수세율을 곱하면 징수세액이 결정된다. 징수세율은 월 급여 형태와 연봉기준이 각각 다른데 월급여의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20을 적용하고 연봉기준인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6~38%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2-5. 소득신고 선택

종교인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거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거나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기존에 근로소득으로 자진신고 하던 종교인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종교인소득과 비과세 소득, 필요경비 등은 종교인이 종교인소득(기타소득)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따라서 종교인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근로소득의 과세 표준과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따르면 된다.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중에 어느 쪽이 세금면에서 유리한지는 <표 2>와 <표 3>을 참조하면 된다. 이를 보면 4인 가족 기준 연 3천만원정도까지는 큰 차이는 없고 소득이 높을수록 종교인소득세가 유리하다. 이는 종교인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근로소득보다 많이 인정하기 때문이다.

종교인소득 신고를 할 경우에는 청빙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하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이 아닌 종교인소득 신고를 해도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대상이 되므로 굳이 근로소득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이 종교인소득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소득신고 및 납세

종교관련 종사자의 소득신고와 납세는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거나 종교인이 개인적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하고 납부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소득신고를 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고, 사례비를 지급하는 교회나 종교단체가 사례비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여 대신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교회행정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는 중대형교회에서는 대부분 원천징수 방법을 택하겠지만 1인 목회자 교회나 소형교회에서는 어느 방법이든 큰 차이가 없다.

3-1. 원천징수

(1) 원천징수의 뜻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교회)가 사례비 등을 지급할 때 법 소정의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지급한 후 이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원천징수를 할 경우에는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후 이를 12로 나누어 매월 공제한다. 이렇게 하면 개인이 일일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부하는 번잡함을 피할 수 있고 세무당국에서도 징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세는 대부분 원천징수의 방법에 의해 납부한다.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법 127①7). 원로목사나 퇴직목회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교회는 반드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익년 5월에 종교인소득에 대한 종합신고와는 별도로 퇴직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2) 세액산정

원천징수 세액 산정 방법은 월급여와 연봉기준이 다르다.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월급여: 원천징수세액=[(매월분 소득×12)-필요경비]×20%×1/12
- 연 봉: 원천징수세액=[(연간소득-필요경비-기본공제-추가공제)×기본세율]-자녀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1/12

이와 같이 원천징수세액산정이 매우 복잡하므로 과세당국에서는 종교인의 급여 수준과 부양가족수에 따르는 상세한 간이세액기준표(<표 1>)를 작성하여 배

포함바 있다. 이 기준표에 따라서 세액을 간편하게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기준표는 표준세액기준이므로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연말에 과부족을 정산할 수 있다.

(3) 월별원천징수와 반기별원천징수

원천징수는 매월 하는 것이 의무이다. 월별 원천징수의 경우 신고납부는 다음달 10일까지이다. 그러나 소규모 기관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반기별로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고용인원의 규모에 상관없이 반기별 특례를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교회는 소속 목회자의 숫자에 상관없이 반기별 원천징수의 특례가 적용되므로 6개월씩 모아 7월과 1월에 년 2회 신고납부하면 된다.

(4) 연말정산

소득세 원천징수는 소득을 추정해서 미리 하는 징수이므로 연말에 실제 소득을 정산해서 많이 낸 경우에는 환급받고 적게 낸 분에 대해서는 납부하는 제도이다. 종교인소득을 지급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교회 등 종교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또는 해당 종교 관련 종사자와의 소속관계가 종료되는 달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한다(법 145의3, 령 202의4).

- 납부세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기본세율
- 종합소득 과세표준 = 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합소득공제

3-2.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

(1)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법 70①)를 해야 한다(법 155의6후단). 즉 목회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교회)가 원천징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소득세신고를 하고 납부할 것인가는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종교인과세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에 예외를 두어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법 155의6). 종교인을 예우하고 강제로 세금을 걷는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함이 아닌가 한다.

종교인이 종교인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뿐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신고를 할 수 있다.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종교인이 그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끝이 나지만 다른 종교단체로부터의 소득이 있거나 종교인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합산해서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개인적으로 하여야 한다.

3-3.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 여부와 상관없이 교회(종교단체)는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할 때 반드시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서 다음해 3월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일정 비율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 최초 2년간은 가산세 부과를 면제한다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일종의 시범시행과 같은 성격이다.

지급명세서에는 그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사례비 이외에 종교활동비 총액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종교활동비를 목회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종교단체에서 공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과 무관하므로 지급명세서에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4. 세무조사

세무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종교단체의 장부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종래 종교계의 자진납세와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종교인소득 과세의 차이는 세무조사의 유무에 있다. 즉 법에 의한 과세는 제대로 세금을 내었는지를 검증해야 하며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가 그 검증의 방법이다.

4-1. 질문조사의 대상

세무조사는 교회(종교단체)의 장부나 서류 중에서 목회자의 소득에 관련되는 부분에 한정된다. 지급명세서, 종교인사례비 통장, 목회자소득에 관한 공동의 회계의서, 정관규정 등이 대상이 된다.

조사대상자는 납세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기부금영수증 발급자 등이다. 조사대상자에는 납세의무자인 종교인(목회자)뿐 아니라 종교인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할 경우에는 징수의무자인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서 지급명세서를 발급하는 모든 자가 포함된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종교인이 개인적으로 소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종교단체(교회)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자이므로 질문 조사 대상이다.

종교인소득과세는 종교과세나 종교활동과세가 아니므로 목회자소득과 관련이 없는 기타 교회 회계장부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아니다.

4-2. 종교활동비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그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 경우에는 종교인에게 지급한 사례비 외에 종교활동비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기록관리한 종교활동비는 종교인 개인소득이 아니므로 이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당연하다.

다만 종교단체가 종교활동비를 사례비와 구분하여 기록하고 관리하지 않은 경우, 가령 종교활동비를 종교인 개인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에 그 총액을 기재해야 하며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여 세무조사의 대상에도 포함된다.

4-3. 수정신고

종교인소득에 대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우선 안내하여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였다. 교회를 음해하려는 세력들의 탈세신고나 교회분열시 내부자들의 탈세제보가 있을 경우에도 과세당국은 바로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교회 등 종교단체에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해서 가급적 세무조사가 종교탄압이나 정교분리원칙을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에서 나온 것이다.

세무조사가 비록 종교인소득에 관련되는 장부로 제한하기는 하였으나 세무조사는 세금을 무기로 정부가 종교를 감시하거나 통제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향후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협의과세제도와 같은 완충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시기

종교인소득 과세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015년 12월 2일, 법 제정당시에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을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탄핵정국 등 국내의 정치상황에서 과세당국과 종교단체 모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였다. 이에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을 다시 2년간 유예하자는 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을 바라는 여론에 밀려 여야 합의로 개정안이 폐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다. 그 구체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다.

- **원천징수** : 2018년 1월분 종교인(목회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부터 종교단체(교회)는 매월 원천징수해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 반기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6개월분을 모아서 2018년 7월과 2019년 1월에 신고 납부하면 된다.
- **개인적 납세** :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 할 경우에는 2019년 5월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1년치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된다.

6.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종교인들이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가족 재산이 1억 4000만원 미만이고 연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이다.

6-1. 근로장려세제

(1) 제도의 취지

‘근로장려세제(Earning Income Tax Credit: EITC)’란 총소득기준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에 대해 일정액의 근로장려금을 설정하고, 근로장려금과 미리 낸 종합소득세의 합계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하여 주는 제도이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정책’의 하나로서 소득이 적은 자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게 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이다. 면세점 이하의 근로자에게도 세금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득의 재분배 측면에서도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저소득 종교인들은 과세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로장려제도 받지 못하였지만 종교인과세의 시행에 따라 오히려 국가로부터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종래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이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사업자로 한정되었으나 그 대상을 저소득 종교인들에게도 확대하였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고 종교인소득신고를 해도 무방하다.

(2)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근로소득자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제외한 사업소득자, 종교인은 가족 재산이 1억 4000만원 미만이고 소득수준이 아래 표의 기준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가령 미혼의 전도사인 경우에는 사례비로 연 1,300만원 미만의 소득이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고, 결혼하였으

나 사모가 일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 소득 2천1백만원 미만, 사모도 같이 일하는 경우에는 연 2천5백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의 액수는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데 최고 23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소득수준에 따른 신청자격과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다.

가족현 구성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1천300만원 미만	900만원 미만 : 77만원 900만원 ~ 1,300만원: 77만원-(총급여액-900만원) x 400분의 77
홀벌이 가구	2천100만원 미만	1200만원 미만 : 185만원 1200만원 ~ 2100만원 : 185만원-(총급여액-1200 만원) x 900분의 185
맞벌이 가구	2천500만원 미만	1300만원 미만 : 230만원 1300 ~ 2500만원 : 230만원-(총급여액-1300만원) x 1200분의 230

(3) 신청방법과 시기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저소득 종교인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5.1-5.31)에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하여야 한다.

자세한 신청안내는 국세청 홈텍스에 있고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다.

- 정기신청 : 2017. 5. 1. ~ 2017. 5. 31. (매년 5월)
- 기한 후 신청 : 2017. 6. 1. ~ 2017. 11. 30.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10% 감액)

6-2. 자녀장려세제

(1) 제도의 취지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적 조세특례제도로서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저출산에 대한 대책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2)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근로소득자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제외한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연소득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다음 표에 따른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가족원 구성	총급여액	자녀장려금
홀벌이 가구	4천만원 미만	2천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 50만원 2천100만원~4천만원 : 부양자녀의 수 × [50만원 - (총급여액등 -2,100만원) × 1,900분의 20]
맞벌이 가구	4천만원 미만	2천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 50만원 2천500만원~4천만원 : 부양자녀의 수 × [50만원 - (총급여액등 -2,500만원) × 1,500분의 20]

(3) 신청방법과 시기

자녀장려금도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과 시기와 동일하다.

7. 종교인소득 과세의 현실

7-1. 세수 예상

2011년 당시를 기준으로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종교인수는 약 23만명 정도인데 그중 기독교 목회자가 약 14만 5천명, 불교 스님은 4만 5천명, 그리고 천주교 신부와 수녀는 1만 5천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이중에 실질

과세대상자는 약 20%인 4만 6000명 정도이고 예상 세수액은 200억~3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오히려 종교인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므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3년 추산에 따르면 기독교만 놓고 봤을 때 약 14만명의 목회자 가운데 연소득 1000만원 미만이 2만 7000여명, 1000만~2000만원이 5만 3000여명에 이른다. 전체 종교인으로 확대하면 최소 10만명이 장려금 지급 대상으로 추산한다. 따라서 실질 세수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2-2. 면세점의 기준

종교인들의 소득이 어느 수준부터 세금을 내야 하는 지가 관심사이다.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약간 다르지만 연소득 수준으로 약 2천 5백만원 정도가 면세점이 아닌가 한다(4인 가족 기준). 아래 <표 1> 종교인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면 따르면 연3천만원 소득인 4인가족의 경우 월 부담세액이 1,950원으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다시 기부금세액공제, 즉 목회자들이 교회에 낸 십일조와 기타 헌금과 다른 항목의 세액공제가 합산하여 이루어짐으로 실제 납세하는 소득세는 거의 없을 것으로 추산된다.

2013년 1월,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전국 교회 담임 목회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담임목사의 월평균 사례비가 213만원, 기타소득 47만원으로 합계 260만원(연소득 30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담임목사 기준이며 부교역자까지 포함한 전체 목회자의 소득수준은 이보다 훨씬 적은 년 2천만 원 내외로 파악되고 있다.

II. 종교인소득 과세를 위한 준비

종교인소득 과세를 위한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종교인소득 과세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이다. 교회 행정조직이 잘 갖추어진 중대형 교회에서는 세무에 밝은 직원들을 둘 수 있고 또 회계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소형교회에서는 결국 목회자들이 준비할 수밖에 없다.

1. 과세대상자 범위

과세대상자는 그 종교단체(교회)에 소속된 종교인, 즉 목사와 전도사이며, 원로목사, 담임목사, 부목사(소속목사), 강도사, 전도사(소속전도사)들이다. 교회 행정직원이나 관리집사,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등은 종교인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며, 이미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교회에서는 세무신고를 하기 전에 목회자의 지위와 급여액에 따라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표 4> 과세 대상 종교인 범위 참조).

1-1. 담임목사

담임목사는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로서 근로자가 아니다. 그러나 세법상으로는 종교인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다. 세법상 근로소득자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다르기 때문이다. 종교인 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면 4인 가족으로서 연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의 소득세는 내지 않고 오히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2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는 거의 면세점이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적은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담임목사의 경우에는 연 3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교인소득 신고를 하는 편이 세금면에서는 유리하다.

그러나 세금의 유리불리를 떠나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함이 옳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목회자와 교회간에 청빙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이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종교계에서 종교인과 세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관을 가진 큰 이유가 종교인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으므로 세금을 더 내고 덜 내고를 떠나서 종교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보다 종교인소득자로 신고하는 것이 옳다. 종교인소득 신고를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대신에 청빙계약서(소속)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1-2. 부목사

부목사(소속목사)들은 대부분 담임목사의 지시에 따라 담임목사의 목회활동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다. 그러나 법원은 부목사는 담임목사로부터 종속성이 없고 그 보수도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부목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목사도 종교인소득자로 신고함이 옳다. 부목사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고 부목사가 가입한 노조는 불법노조로 간주한다. 그러나 노동법상 지위와 세법상의 지위는 다르기 때문에 부목사에게 지급하는 사례비에 대해서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부목사도 담임목사와 마찬가지로 종교인소득자로 신고를 할 경우에는 청빙계약서(소속)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목회자와 교회간에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이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1-3. 전도사

전도사는 목사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일정한 교회(종교단체) 등에 소속되어 목사를 보좌하여 종교 활동을 하는 목회자이다. 전도사는 대부분 담임목사의 지휘를 받아 보좌하는 지위에 있고, 소속 교회에서 정해진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소속 교회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사례비를 지급받고 사례비가 실질적으로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므로 사례비는 전도사가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지로 법원은 전도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교육전도사들은 신대원 재학생들 신분으로서 평일에는 학교 수업을 받고 주말과 수요일과 금요일 등 일정시간을 내어 교회에 봉사하고 약간의 사례비를 받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도사도 담임목사와 마찬가지로 종교인소득자로 신고를 할 경우에는 청빙계약서(소속)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목회자와 교회간에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이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2. 신고소득 : 과세대상소득

목회자가 종교인으로 신고해야할 소득은 소속 교회(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며, 소속 교회(종교단체)로부터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는 금액(종교활동비)은 비과세이다. 대부분은 목회자들이 소속된 교회에서 지급받는 사례비 등이지만 다른 종교단체와 외부에서 부흥회와 강의 등으로 인한 소득은 종교인소득이 아니며, 기타소득으로 구별된 과세 대상이다(<표 5> 과세와 비과세 소득 대비 참조).

2-1. 소속 교회에서 받는 소득

(1) 목회자의 소득항목

담임목사와 부목사의 지위에 따라서 소득항목이 다른데 여기에서는 담임목사 기준으로 설명한다. 기획재정부에서 한때 배포한 개신교세부과세기준안은 폐기되었다고는 하지만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근로소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의미를 가진다.

(2) 사례비(생활비)

종교인에게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생활비와 사례비는 물론이고 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격려금, 휴가비, 특별격려금 등은 과세대상이 된다. 문제는 종교활동에 관계된 도서비, 연구비도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목회자 개인의 소득 통장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할 비용을 교회가 지급하게 되면 목회자 소득이 된다. 가령 목회자의 소득세를 교회가 부담하거나 치료비를 교회가 부담할 경우 그 금액은 목회자의 소득으로 된다.

(3) 목회비, 식대 등

목회활동비, 선교비, 전도심방비, 사역지원금, 수련회지원금, 접대지원금, 판공비, 경조사비, 통신비 등은 종교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으로서 교회의 공금이고 목회자의 소득이 아니다. 다만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에 사용해야 하고 목회자 사례비와 구분회계, 구분 기장, 구분 관리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목회활동비는 교회통장으로 관리하며 그 사용도 가급적 법인카드로 해야 하며 부득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목회행정실을 통해 지급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목회비를 교회에서 관리하지 않고 목회자의 개인 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할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급여명세서에 종교활동비의 총액을 사례비와는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목회활동비(종교활동비)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한다.

목회활동을 위해 목회자가 신도와 식사하는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지출증빙을 갖춘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또 교회에서 목회자의 식대명목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10만원까지는 비과세이지만 그 이상의 금액은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된다.

(4) 출장비, 여비, 차량유지비 등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여비 중 실비변상적 비용으로 정산되지 않은 부분은 과세대상이다. 교회소유 차량을 종교활동에 이용하는 경우 유지비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본인 소유 차량 이용할 경우에는 월 20만원 초과 금액이나 타인소유 차량 이용(렌트카 사용)하면서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다.

(5) 4대 보험료, 공과금 등

4대 보험료의 부담은 종교인소득신고와 근로소득신고의 경우에 다르다. 즉 근로소득신고를 할 경우에는 종교인과 종교단체간에 근로계약을 작성해야 하고 근로자인 경우에는 의료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적이고 그 보험료의 절반은 종교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이상을 교회가 부담하면 목회자의 소득이 된다.

종교인소득신고를 할 경우에는 의료보험과 연금보험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직장 가입자가 아니고 지역가입자로 되며 그 보험료는 전부 목회자 개인 부담이다. 따라서 보험료를 교회에서 대납해주면 목회자의 소득으로 된다.

기타 공과금, 이사비, 건강관리비, 의료비, 등은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나 목회자가 지출할 비용을 교회에서 부담한 경우는 모두 과세대상이다.

(6) 사택제공

교회소유사택을 목회자에게 제공하거나 교회가 직접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이지만 금전으로 사택을 지원하면 지원금은 목회자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대상이 된다. 가령 목회자가 자가 소유인 집에 살면서 교회로부터 임차료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받으면 목회자의 소득이 된다. 다만 교회가 임대해서 임차료를 내는 경우와 임차료를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차별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비과세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한편 사택공과금을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회자의 소득이 되어 과세된다.

(7) 교육, 복지 혜택

본인에 대한 학자금 지원액 중 비과세 요건 충족하는 경우 즉, 법령에서 정한 학교 또는 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과금은 모두 비과세이다. 그러나 이외의 별도의 교육과정 등에 지원하는 금액은 과세대상이 된다. 가령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각 대학에서 운영하는 최고경영자과정(AMP) 등록금 지원은 과세대상이다. 한편 자녀 학자금(해외유학비 포함) 명목으로 목회자에게 지원한 금액은 과세대상이다.

월 10만원 이하의 출산지원금 또는 6세 이하의 보육지원금은 비과세이지만 이를 초과하거나 7세 이상 자녀를 위해 지원하는 경우는 모두 과세대상이다.

(8) 퇴직금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원로목사와 퇴직목회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교회는 반드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익년 5월에 종교인소득에 대한 종합신고와는 별도로 퇴직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2-2. 소속교회 이외의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

목회자가 다른 교회나 노회, 총회 등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거나 세미나 강사로 초빙되어 사례비 또는 강사료, 회의비 등을 받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사례비를 지급하는 교회나 노회 등에서 원천징수를 한 후 지급하며 목회자가 따로 소득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목회자는 소속교회에서 받는 사례비와 다른 교회 등에서 받는 사례비를 모두 합산해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성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2-3. 종교단체 이외로부터 받는 소득

목회자가 종교단체가 아닌 학교 등에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학교의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한다.

또한 심방사례비나 주례비와 같이 교회가 아니라 교인이 직접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교인들이 교회에 목회자를 위한 특별헌금을 하고 교회가 이를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인 소득이 되고 직접 목회자에게 전달한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교회재정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2-4. 기부금 세액공제

목회자들은 대부분 소득에서 십일조와 기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로 생활한다. 따라서 이제 목회자들도 종교인소득세를 납부하면서 교회(종교단체)에 헌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시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

다만 기부금세액공제 중에서 종교단체에 대한 헌금은 공제액이 그다지 크지는 않다.

3. 소득신고와 납부 :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신고

종교인소득 신고이든 근로소득 신고이든 교회가 원천징수하는 방법과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대부분 원천징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징수방법에 따라 신고하는 내용이나 방법과 절차 등이 다르다 (<표 7> 세무서 제출서류 : 교회와 목회자 참조).

3-1. 교회 소속 목회자에 대한 원천징수 및 신고 납부

(1) 원천징수 세액 : 간이세액표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시 세액계산방법이 복잡하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가 마련되어 있다.

- 연소득 미확정: (월지급소득 x 12 - 필요경비) x 원천징수세율 ÷ 12
- 연소득 확정: (연소득 - 필요경비 - 기본공제) x 기본세율 - 자녀표준세액공제

(2) 신고납부절차 : 반기별 납부특례

원천징수방법에는 월별납부가 원칙이나 상시고용인원 20명이하인 소규모 단체의 납부편의를 위해 반기별 납부특례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상시 인원규모에 관계없이 반기별 납부특례가 적용된다.

(3) 납부 신고 시기

- 월별 원천징수의 경우 :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내역(다음 달 10일)
- 반기별 원천징수특례 : 상반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7월 10일)
하반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다음해 1월 10일)
- 기타소득, 근로소득 연말 정산 원천징수 : 다음해 2월 말일까지(원천징수 영수증 제출 3월 10일)
- 연말정산 소득 자료 제출 집계표 (기타소득 포함) : 기타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3월10일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다음해 5월 말일까지
- 지급명세서 제출 : 종교인 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다음해 3월 10

일 제출(종교인소득을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3-2. 외부인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등에 대한 원천징수

교회 외부의 종교인 등에 대한 강사료, 부흥회 사례비등은 종교인소득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기타소득 중 강사료에 해당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과세표준 : 강연료 × 필요경비(80%) = 과세표준(20%)
- 세율 : 과세표준 × 20%

4. 교회정관과 재정·회계의 정비

4-1. 고유번호증 부여

종교인과세는 교회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목회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과세에 대비해서 교회는 교회의 재정과 목회자의 소득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리 작은 규모의 교회라고 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82)을 부여받아야 한다. 고유번호증이 있으면 은행에서 교회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따라서 교회의 모든 재정은 교회명의 통장으로 하고, 목회자는 개인명의의 소득 통장을 가능한 새로 만들어 2018년 1월 1일부터는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교회명의 통장도 목회자 사례비지급통장, 목회활동비통장, 기타 통장 등으로 구분하여 여러 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2. 교회정관과 재정규칙의 정비

종교인소득 과세를 위해선 교회(종교단체)의 정관 또는 재정규칙의 정비가 필요하다. 소득세법시행령은 종교활동비를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비과세로 하고 세무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회자의 생활비로 지급되는 사례비와 종교활동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관이나 재정규칙의 마련이 필요하다.

종교단체의 정관과 재정규칙에는 재정운용원칙, 회계원칙(사례비와 종교활동비를 구분기장 관리한다는 규정 포함), 공동의회승인에 의한 예산결산 승인, 현금의 관리와 교회명의 통장개설, 목회자 사례비와 보수의 책정과 관리, 종교활동비의 성격과 사용목적, 관리, 증빙 등에 관한 규정을 담아야 한다(<표 9> 교회의 모범정관 및 재정운용규칙 참조).

4-3. 교회재정과 회계정비

(1) 재정 투명성 확보

종교인소득 과세가 직접 교회나 종교단체를 대상이라고 한 것은 아니라도 목회자의 소득이 대부분 교회로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종교인소득 과세에 대비해서 재정과 회계를 정비해야 한다.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을 계기로 하여 교회의 재정 사용이 한층 더 투명하고 깨끗해 져야 할 것이다.

교회의 교회재정과 회계는 적법성과 절차의 정당성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세가지 원칙 하에서 정확한 예산의 확보와 집행 그리고 결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한 위임전결규정을 가져야 하며 예산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기안행위가 있어야 한다. 확보되지 않은 예산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확보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는 회계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한 모든 교회의 지출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야 한다. 목회자의 소득에 관련 되는 지급은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2) 목회자 사례비 항목 정비

교회재정과 회계의 정비에 있어서 목회자의 사례에 관련된 항목을 “사례비” 한 항목으로 단일화해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과거 목회자의 사례비를 목회비, 도서비, 목회연구비, 심방비, 격려금 등 여러 항목으로 구분하여 지급한 관행이 있어서 과세당국이 이를 다양한 소득 유형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려면 교회도 이제는 일반 직장의 연봉개념을 도입해서 목회자가 생활에 사용할 총 총금액을 일년 단위로 정하여 개인 소득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4-4. 목회활동비(종교활동비)

종교인소득 과세법 시행령 제정에 있어서 최대의 쟁점이 된 부분이 종교활동비의 과세와 세무조사 여부에 있었던 만큼 모든 교회는 목회활동비를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공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표 6> 목회활동비(종교활동비)의 구분 참조)

(1) 목회활동비(종교활동비)의 뜻

목회활동비는 목회자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와는 별도로 목회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목회자가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비용이다. 목회활동비는 교회발전과 목회유익에 관련이 있는 목회자의 대내외 사역 및 교회대표자로서의 품위유지를 위해 목회자의 재량으로 사용하는 비용으로서 주로 심방, 전도, 선교, 구제, 식사, 접대, 도서구입 등에 사용된다.

각 교회나 종교단체마다 목회활동비의 이름은 다양한데, ‘목회비’, ‘목회연구비’, ‘판공비’, ‘수행비’, ‘접대비’ 등 다양하지만 종교인소득 과세에 대비해서 앞으로는 ‘종교활동비’ 또는 ‘목회활동비’로 용어를 통일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르면 종교활동비는 “종교단체(교회)가 소속 종교관련종사자(목회자)에 대하여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한 금액 및 물품”을 가리킨다.

따라서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목회활동비라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기준이 없거나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 또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소위 특활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종교활동비가 아니다. 또 종교인이 아닌 교회의 장로나 기타 관리집사 등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는 종교활동비가 아니다.

(2) 목회활동비(종교활동비)의 과세·신고·세무조사 여부

교회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목회활동비는 어디까지나 교회의 공금이고 목회자 개인소득이 아니다. 따라서 목회활동비는 비과세 소득이다. 문제는 목회활동비(종교활동비)를 어떻게 회계처리하고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신고와 조사의 대상인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이다.

목회활동비(종교활동비)를 목회자 개인 사례비와 구분하여 기장하고 관리하게 되면 이는 종교단체에 귀속되는 부분으로서 애초부터 종교인 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며 신고할 필요도 없고 또 세무조사 대상도 아니다.

여기에서 구분 기록·관리한다는 말은 목회활동비를 목회자 사례비와는 구분하여 기장(회계)하고, 교회명의로 목회활동비 통장으로 관리하며, 정관에서 정한 용도대로 사용하며, 그 통장의 사용을 위해 발급 받은 법인카드로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처를 목회 행정실에서 기록·관리하면 된다.

(3) 목회활동비(종교활동비)의 신고와 조사

교회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은 목회활동비이지만 이를 목회자 사례비와 구분기장,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회활동비의 총액을 신고해야 비과세로 된다. 다시 말하면 목회활동비(종교활동비)를 목회자의 개인 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목회자의 소득항목으로 되므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목회활동비(종교활동비) 총액을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한다. 총액만 기재하면 되고 그 용도나 개별 사용금액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신고한 목회활동비(종교활동비)는 비과세이기는 하지만 목회자의 소득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다.

(4) 목회활동비(종교활동비)의 재량과 증빙

목회활동비(종교활동비)는 총액에 대한 교인총회 또는 당회 결의가 있으면 그 사용은 목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문제는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일일이 갖추어야 하는가 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1차 총회 보고서는 “목사의 각종 선교활동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목사의 재량에 맡겨 처리해야하고, 증명자료는 없어도 가하다”라고 결의한 해석이 있다. 즉 목회활동비는 총액으로 책정되어 있으면 그 구체적인 사용에 대한 재량은 목회자에 일임되어 있어 그 사용내역에 대한 영수증이나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점은 목회활동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사회단체장의 업무추진비 또는 판공비 유용에 대해 법원이 내린 판결 취지와도 부합한다. 즉 대법원은 “법인이나 단체에서 임직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 명목으로 정관 기타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이른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는 정관이나 그 지급기준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용도나 목적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한 후에도 그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그 사용처나 규모,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단지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0.6.24.선고 2007도5899 판결).

(5) 목회활동비(종교활동비)의 유용과 횡령

목회활동비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목회활동과 관련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목회와 관련되었다고 하더라도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어느 정도를 사적사용으로 볼 것인가는 목회자의 지위와 목회활동의 특수성에 비해 일반사회의 업무추진비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사회단체장은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목회활동은 훨씬 광범위하다. 즉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리고 일반인들이 다 공휴

일로 쉬는 주일(일요일)까지 전인격적인 충성을 요하는 것이 목회자이다. 달리 표현하면 목회자에게는 공적업무(목회활동)와 사적 생활이 거의 구분이 없다시피 하다. 이러한 목회활동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목회활동비를 사적으로 유용하였느냐 여부는 업무추진비와는 달리 극히 제한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III. 부록

부록 1. 종교인소득 과세 개요

부록 2.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부록 3. 종교인소득 세액

<표 1>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표 2>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의 비교

<표 3> 소득 수준별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 세액 비교

부록 4. 종교인소득 과세에 대한 교회와 목회자의 준비

<표 4> 과세 대상 종교인 범위

<표 5> 과세와 비과세 소득 대비

<표 6> 목회활동비(종교활동비)의 구분

<표 7> 세무서 제출서류 : 교회와 목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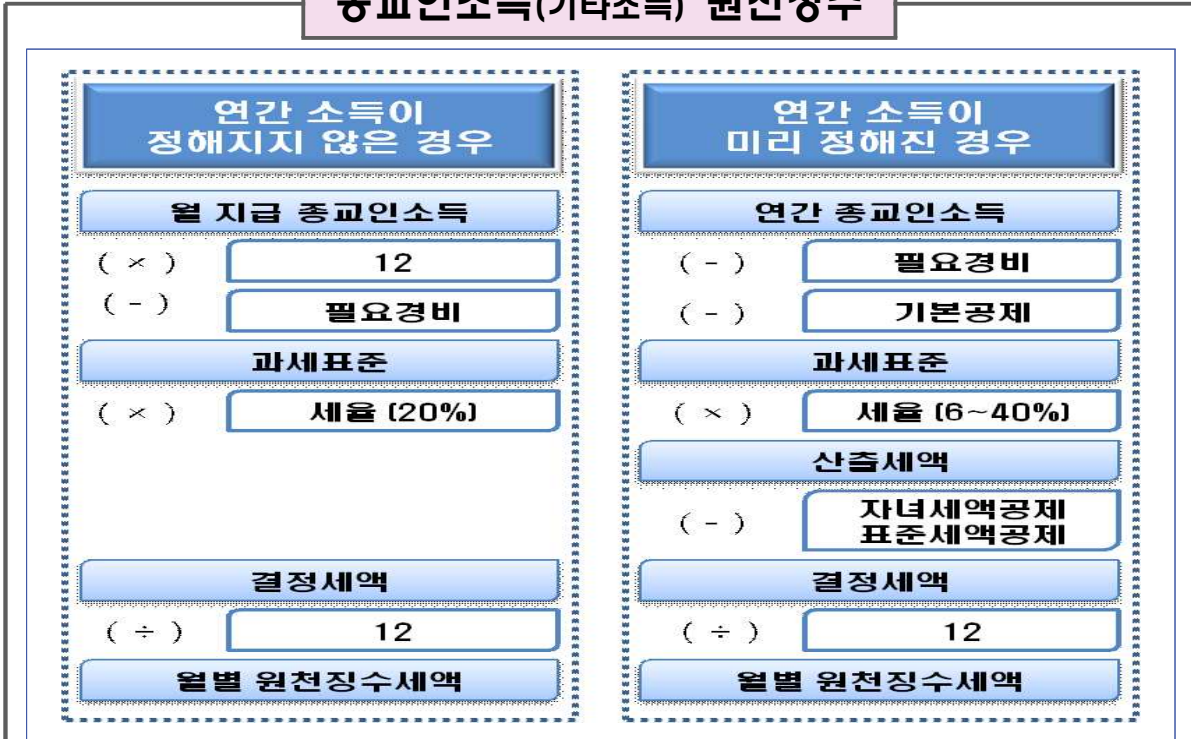
<표 8> 교회와 목회자 준비사항 목록표

<표 9> 교회의 모범정관 및 재정운용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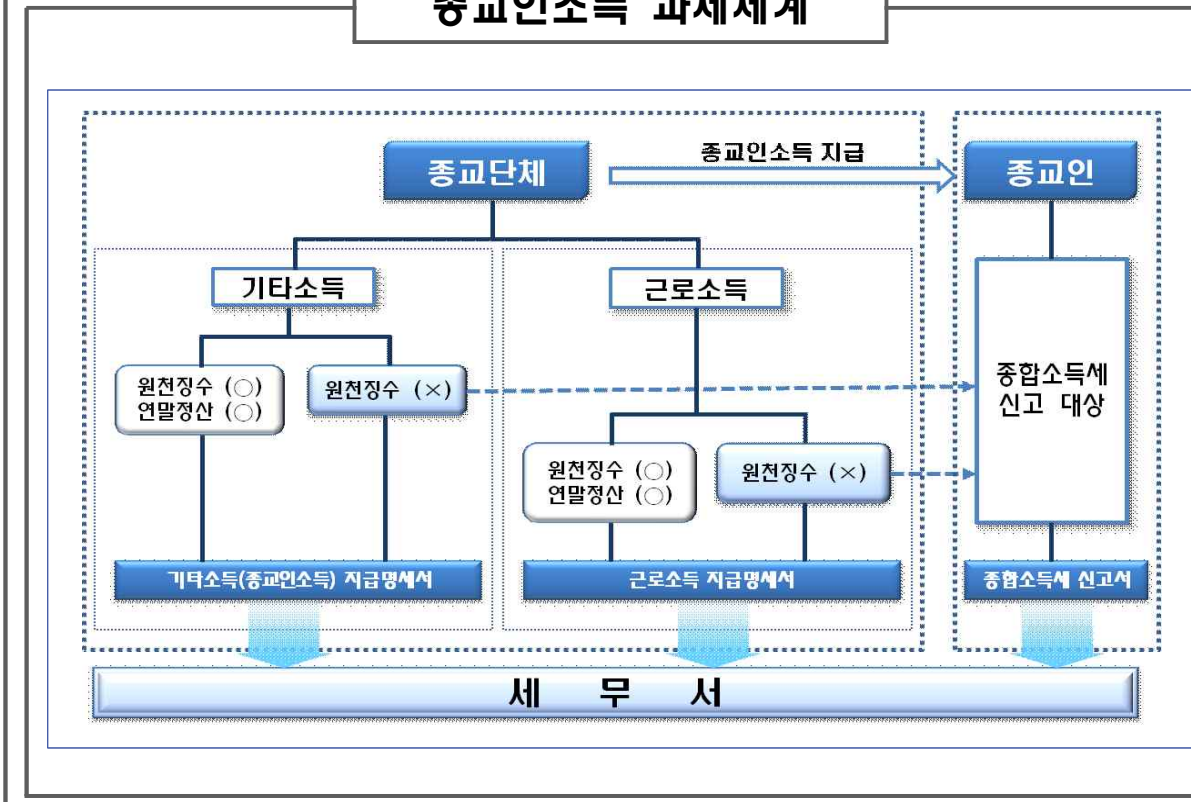
부록 5.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서식

부록 1. 종교인소득 과세 개요

종교인소득(기타소득) 원천징수



종교인소득 과세체계



부록 2.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구분	소득세법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조항)	소득세법 시행령/규칙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조항)
총칙	<p>제1조 (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납세의무)</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p>제4조 (소득의 구분)</p> <p>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p>제5조 (과세기간)</p> <p>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p> <p>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p> <p>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p>	<p>제1조 (목적)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p> <p>제6조 (납세지)</p> <p>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p> <p>③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결정한다.</p>	
<p>종교인 소득(과세대상 소득)</p>	<p>제21조(기타소득)</p> <p>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p> <p>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p> <p>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p> <p>③ 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p> <p>④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2조 (퇴직소득)</p> <p>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p> <p>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p>	<p>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p> <p>⑭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단체(이하 "종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p> <p>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p> <p>2.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p> <p>3.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p> <p>⑮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품·물품(법 제1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아목에 따른 금액 및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과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다.</p> <p>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p> <p>④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p> <p>4.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p>

비 과 세 소득	<p>제12조(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p> <p>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p> <p>아.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2)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3)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5) 종교관련종사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p>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p> <p>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p> <p>18.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p> <p>제19조(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p> <p>① 법 제12조제5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법 제12조 5호 아목의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종사하는 종교단체의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을 말한다.</p> <p>② 법 제12조제5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소속 종교단체가 제공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규정하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p>③ 법 제12조제5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p>

		<p>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교관련 종사자의 소유차량을 종교관련 종사자가 직접 운전하여 종교단체의 종교관련 활동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종교단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2. 종교관련종사자가 제12조제15호의 벽지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3. 제12조제18호에 따른 금액 및 물품 4. 종교관련종사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p>④ 법 제12조제5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이란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교관련종사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하여 종교관련종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하며, 임대차기간 중에 종교관련종사자가 전근·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직원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이를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주한 종교관련종사자가 전근·퇴직 또는 이성한 후 당해 종교단체의 종교관련종사자나 종업원등 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
--	--	--

		<p>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p> <p>규칙 제10조의2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범위) 법 제12조제5호아목 5)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종교단체가 소유한 것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나,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한 것으로서 종교관련종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p> <p>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5-313호]</p> <p>248 종교관련 종사자</p> <p>2481 성직자</p> <p>24811 목사</p> <p>24812 신부</p> <p>24813 승려</p> <p>24814 교무</p> <p>24819 그 외 성직자</p> <p>2489 기타 종교관련 종사자</p> <p>24891 수녀 및 수사</p> <p>24892 전도사</p> <p>24899 그 외 종교관련 종사자</p>
필요 경비	<p>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p> <p>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p> <p>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p>	<p>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p> <p>3.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비과세소득 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다음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p>

	<p>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p> <p>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p>	<table border="1"> <tr> <th data-bbox="863 268 1086 360">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th> <th data-bbox="1086 268 1361 360">필요경비</th> </tr> <tr> <td data-bbox="863 360 1086 430">2천만원 이하</td> <td data-bbox="1086 360 1361 430">받은 금액의 100분의 80</td> </tr> <tr> <td data-bbox="863 430 1086 568">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td> <td data-bbox="1086 430 1361 568">1,600만원+(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td> </tr> <tr> <td data-bbox="863 568 1086 707">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td> <td data-bbox="1086 568 1361 707">2,60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td> </tr> <tr> <td data-bbox="863 707 1086 857">6천만원 초과</td> <td data-bbox="1086 707 1361 857">3,200만원+(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td> </tr> </table>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	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600만원+(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60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	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600만원+(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60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원천징수	<p>제127조 (원천징수의무)</p> <p>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p>제155조의6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종교인소득(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 제134조 부터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5조의3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교인소득을 지급 받은 자는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p> <p>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p> <p>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p>	<p>제202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p> <p>④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별표3의3의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p> <p>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1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전 과세기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p>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p> <p>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5호가목 및 제19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2. 종교단체</p> <p>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p> <p>① 법 제16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말한다.</p> <p>4의3. 법 제59조의4제3항제2호 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p>
연말정산	<p>제145조의3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p> <p>① 종교인소득을 지급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종교인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종교관련종사자와의 소속관계가 종료되는 달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p> <p>② 종교인소득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의 신고,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또는 원천징수 시기에 관하여는 제144조의2(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4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은 “종교인소득”으로, “사업자” 또는 “사업소득자”는 “종교관련종사자”로, “거래계약”은 “소속관계”로, “해지”는 “종료”로 본다.</p> <p>제155조의6(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p>	<p>제202조의4(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p> <p>① 법 제1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종교인소득에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법 제145조의3에 따라 신고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p> <p>②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의 신고,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또는 원천징수 시기에 관하여는 제201조의11(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부터 제201조의1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사업자” 또는 “사업소득자”는 “종교관련종사자”로,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는 “기타소득연말정산신청서”로,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기타소득원천징수부”로 본다.</p>

	<p>수 예외) 종교인소득(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 제134조부터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5조의3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 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p>	
지급 명세서	<p>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p> <p>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p>②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p>	<p>제213조 (지급명세서의 제출)</p> <p>① 법 제164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명세서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14조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등)</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액 및 물품은 제외한다.</p>

	<p>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p> <p>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 관련 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p> <p>⑦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⑧ 제1항에 따른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한다.</p> <p>⑨ 국세청장은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명세서를 해당 기타소득의 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p> <p>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질문 조사</p>	<p>제170조 (질문·조사)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제21조</p>	<p>제222조(질문·조사)</p> <p>② 영 제41조제15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는 경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170조에 따라 질문·조사하는 때에</p>

<p>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납세조합 4.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5. 제156조 및 제156조의3 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6.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7.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9.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p>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품 등외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 장부 또는 서류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없다.</p> <p>③ 종교인소득에 관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170조의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종교단체에 탈루 또는 오류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우선 안내하여야 한다.</p>
--	--

부록 3. 종교인소득 세액

<표 1>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 제4항 관련)

월지급액 (천원)		공제대상 가족 수 별 원천징수 세액 (원)									
이상	이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1,245	1,250	-	-	-	-	-	-	-	-	-	-
1,495	1,500	1,000	-	-	-	-	-	-	-	-	-
1,650	1,660	1,160	1,000	-	-	-	-	-	-	-	-
1,950	1,960	2,640	1,000	1,000	-	-	-	-	-	-	-
1,990	2,000	5,000	1,030	1,000	-	-	-	-	-	-	-
2,200	2,210	17,370	1,240	1,000	-	-	-	-	-	-	-
2,490	2,500	34,450	11,950	1,030	1,450	1,000	-	-	-	-	-
2,990	3,000	63,900	41,400	18,900	1,950	1,000	1,050	1,210	-	-	-
3,480	3,500	98,700	76,200	53,700	31,200	8,700	1,300	1,460	1,290	1,100	-
3,980	4,000	146,150	123,650	101,150	78,650	56,150	33,650	11,150	1,790	1,850	1,400
4,480	4,500	194,780	172,280	149,780	127,280	104,780	82,280	59,780	37,280	14,780	2,400
4,980	5,000	246,280	223,780	201,280	178,780	156,280	133,780	111,280	88,780	66,280	43,780
5,480	5,500	306,600	284,100	261,600	239,100	216,600	194,100	171,600	149,100	126,600	104,100
5,980	6,000	370,700	348,200	325,700	303,200	280,700	258,200	235,700	213,200	190,700	168,200
6,480	6,500	442,700	420,200	397,700	375,200	352,700	330,200	307,700	285,200	262,700	240,200
6,980	7,000	514,700	492,200	469,700	447,200	424,700	402,200	379,700	357,200	334,700	312,200
7,480	7,500	591,800	566,800	541,800	519,200	496,700	474,200	451,700	429,200	406,700	384,200
7,980	8,000	671,800	646,800	621,800	596,800	571,800	546,800	523,700	501,200	478,700	456,200
8,480	8,500	751,800	726,800	701,800	676,800	651,800	626,800	601,800	576,800	551,800	528,200
8,980	9,000	831,800	806,800	781,800	756,800	731,800	706,800	681,800	656,800	631,800	606,800
9,480	9,500	911,800	886,800	861,800	836,800	811,800	786,800	761,800	736,800	711,800	686,800
9,980	10,000	991,800	966,800	941,800	916,800	891,800	866,800	841,800	816,800	791,800	766,800
10,480	10,500	1,071,800	1,046,800	1,021,800	996,800	971,800	946,800	921,800	896,800	871,800	846,800
10,980	11,000	1,151,800	1,126,800	1,101,800	1,076,800	1,051,800	1,026,800	1,001,800	976,800	951,800	926,800
11,480	11,500	1,231,800	1,206,800	1,181,800	1,156,800	1,131,800	1,106,800	1,081,800	1,056,800	1,031,800	1,006,800
12,000	12,000	1,315,000	1,290,000	1,265,000	1,240,000	1,215,000	1,190,000	1,165,000	1,140,000	1,115,000	1,090,000
12,000	초과	12,000천원 초과금액의 20%상당액									

* 이 표는 전체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중 소득수준 500만원 단위로 일부만 발췌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임.

주 :

1. 위 간이세액 조건표의 해당세액은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지급시 연간지급받는 금액 또는 월 지급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기본공제, 세액공제 수준을 반영하여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한 금액임.

가. 적용산식

[[{(매월 지급하는 소득 × 12 또는 연간 지급하는 소득) - 필요경비(80~20%)} - 기본공제 - 연금소득공제] × 세율 (20%) - 총지급액 구간별 기부금, 연금계좌세액 공제, 표준세액공제를 반영한 세액공제* 결과 계산한 세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나. 연간 총지급액 구간별 기부금등 지출수준을 반영한 세액공제 금액

총지급액이 7천만원 이하인자는 총지급액의 2.3%(7천만원 초과자는 정액 161만원 + 결정세액의 10% (90만원 한도)

2. 공제대상 가족의 수를 산정할 때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보아 계산함

3. 추가공제 대상자, 자녀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간이세액표 적용방법

가. 공제대상 가족 중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공제)가 있는 경우와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 세액은 “나”의 계산식에 따른 공제대상 가족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나. 추가공제 적용시 공제대상 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 가족의 수 + 경로우대, 장애인 공제대상 인원 수, 20세 이하 자녀의 수

4.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10명의 세액으로 징수

<표 2>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의 비교

	종교인소득	근로소득
과세액 계산 방법	{‘연간 종교인소득금액 합계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액’ × 소득세율(6-38%)} - 세액공제액	{‘연간 근로소득 금액 합계액 - 소득공제액’ × 소득세율(6-38%)} - 세액공제액
원천징수 의무자	교회가 지급시 원천징수해야하나, 교회가 하지 않는 경우 목회자 본인이 신고해야 함.	교회가 지급시마다 원천징수
공제대상	필요경비, 부양가족공제, 기부금 공제 등	근로소득공제(4대보험료 등), 부양가족공제, 교육비 공제, 기부금공제, 신용카드공제, 의료비 공제 등
사회보험료 부과	독립된 별개 소득자로 개인적으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하여야 함	근로소득자이므로 교회단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대상임

<표 3> 소득 수준별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 세액 비교

연지급 및 월지급 단위(천원), 원천징수세액 단위(원)

연지급	월지급	본인		본인, 배우자		본인, 배우자, 자녀1	
		종교인	근로자	종교인	근로자	종교인	근로자
20,000	1,667	1,170	12,220	1,000	7,720	0	0
30,000	2,500	35,040	41,630	12,540	28,600	1,460	13,150
40,000	3,333	83,630	120,210	61,130	95,210	16,130	45,740
50,000	4,167	163,230	233,600	140,730	205,470	95,730	126,690
60,000	5,000	248,520	353,910	226,020	325,150	181,020	237,550
70,000	5,833	347,740	490,760	325,240	443,770	280,240	343,330
80,000	6,667	468,620	706,100	446,120	658,100	401,120	506,050
90,000	7,500	595,000	896,610	570,000	847,600	522,080	683,460
100,000	8,333	726,200	1,082,590	701,200	1,032,590	651,200	856,640

부록 4. 종교인소득 과세에 대한 교회와 목회자의 준비

<표 4> 과세 대상 종교인 범위

구 분	지 위		과 세 내 용
종교인(목회자)	담임목사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 : 근로자성 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인소득 과세 대상 -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신고 선택 가능 - 종교인소득 신고 바람직 (근로소득신고시 근로계약서 제출 의무)
	부목사	근로자성 부인(판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인소득 과세 대상 -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신고 선택 가능 - 종교인소득 신고 바람직 (근로소득신고시 근로계약서 제출 의무)
	강도사 전도사	근로자성 인정(판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인소득 과세 대상 -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신고 선택 가능 - 종교인소득 신고 바람직 (근로소득신고시 근로계약서 제출 의무)
	기타	원로목사, 협동목사, 선교사(교회가 직접 파송한 경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인소득 과세 대상 -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신고 선택 가능 - 종교인소득 신고 바람직 (근로소득신고시 근로계약서 제출 의무) - 해외선교사에 대한 지원은 선교비로서 비과세
항존직원	장로, 권사, 집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직으로 무보수
비종교인(근로자)	반주자, 지휘자, 사무행정 직원, 관리집사, 운전기사, 음향미디어직, 기타 기능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근세 대상 - 목사, 전도사 자격자 경우 종교인소득 과세 대상

<표 5> 과세와 비과세 소득 대비

소득항목	과 세	비과세
사례비(생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비, 상여금, 수양비, 의료비, 체력단련비, 연구비, 교단연금적립금, 도서비 - 목회자 개인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액은 사례비로 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비 등을 교회의 공금으로 구입하면 비과세
목회비(선교비): 규약 또는 소속 종교 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에 사용하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회비를 목회자의 사례비와 구분하여 기장·관리하지 않은 경우(목회자 개인통장에 입금하여 사용), 그 총액을 지급명세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종교인소득으로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회활동비, 선교비, 전도심방비, 사역지원금, 수련회지원금, 접대지원금, 판공비, 기밀비, 경조사비, 통신비 - 사례비와 구분 기장·관리 - 교회명의 통장 사용
식 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대명목으로 목회자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월 10만원 초과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회활동을 위해 목회자가 신도와 식사하는 비용으로 지출증빙을 갖춘 경우 - 식대명목으로 목회자에게 현금으로 지원: 월 10만원 미만
출장비, 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여비 중 실비변상적 비용으로 정산되지 않은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여비 중 실비변상적 비용으로 정산된 금액
차량유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회자 명의 차량을 목회활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월 20만원 초과 지원금 - 렌트카 사용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회명의 차량 사용, 공과금 - 목회자 명의 차량을 목회활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월 20만원 미만 지원금
4대 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목회자 개인부담, 교회에서 지원할 경우 사례비로 간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50%는 교회지원 비과세
사택제공, 공과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회자 소유 집에 살면서 교회로부터 사택비용으로 매월 지급받는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회소유사택을 목회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교회가 임차하여 목회자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료
학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회자 본인: 최고경영자과정(AMP) 등록금 - 자녀 학자금: 목회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회자 본인: 법령에서 정한 학교 또는 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과금 - 자녀: 장학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
보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10만원 미만의 출산지원금 또는 6세 이하의 보육지원금
퇴직금, 연금적립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지급퇴직금 - 교단 연금적립금 	
부흥회, 외부강사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인소득은 아니지만 기타소득 과세(종합소득세 신고) 	
심방사례비, 주례사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인소득이 아님

<표 6> 목회활동비(종교활동비)의 구분

사용주체	유형	기장·관리	비과세	과세	신고	세무조사
종교인 (목회자)	종교단체(교회)의 정관 또는 총회결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통상적인 종교활동을 위해 종교인이 재량으로 사용하도록 지급한 금액	목회자 개인사례비와 목회활동비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관리하는 경우	종교단체의 공금으로서 종교인소득이 아니므로 비과세		종교단체의 공금으로서 종교인소득이 아니므로 신고의무 없음.	종교단체의 공금으로서 종교인소득이 아니므로 세무조사 대상이 아님
		목회자 개인사례비와 목회활동비를 구분하지 않고 목회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목회자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하는 경우	종교인 소득에 귀속되지만 종교활동비 액수를 신고하는 경우 해당금액 비과세	종교활동비 총액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종교인개인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	지급명세서에 종교활동비 총액을 기재하여 신고	종교인 소득에 귀속되어 세무조사 대상
	종교단체(교회)의 정관 또는 총회결의로 정한 기준 없이 임의로 종교인에게 지급한 활동비			법령상 종교활동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여부에 상관없이 종교인 소득으로 과세		법령상 종교활동비에 해당하지 않아 세무조사 대상
종교인 이외의 종교단체의 기관, 사람(장로, 관리집사등)	종교단체의 활동비로서 종교인과세와 무관함		종교인소득이 아니므로 비과세		종교인소득이 아니므로 신고의무 없음	종교인소득이 아니므로 조사대상이 아님

<표 7> 세무서 제출서류 : 교회와 목회자

구분	세분	작성/제출서류	제출시기	비고
원천징수	월별 원천징수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②) - 소득자별 원천징수부(⑤)	- 다음 달 10일	년 12회 신고
	반기별 원천징수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승인신청서(①)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②) - 소득자별 원천징수부(⑤)	- 반기별 납부신청서 : 12월, 6월 - 상반기 원천징수 신고 : 7월10일 - 하반기 원천징수 신고 : 다음해 1월10일	종교단체는 상시 고용인원에 관계없이 특례인정(년 2회 신고)
연말정산	연말정산 신청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서(③)	다음해 2월 말일(원천징수영수증 : 3월 10일)	종교인소득을 연말정산하려는 종교인이 종교단체에 제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종교인소득 연말정산용)(④)	다음해 2월 말일(원천징수영수증 3월 10일)	
	연말정산 포기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포기서(③)		
지급명세서	*종교활동비 총액 기재란을 추가한 내용으로 변경될 예정임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⑥)	다음 해 3월 10일	- 연말 정산한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로 대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⑦)	다음해 5월 말일	- 교회가 원천징수하지 않고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소득신고(년 1회) -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신고
	종합소득확정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⑦)	다음해 5월 말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⑧)		종교인소득, 근로소득 신고

<표 8> 교회와 목회자 준비사항 목록표

준비사항	상세 내용
정관 및 재무회계세칙 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사례금 등 지급근거 마련 - 목회자 사례비와 목회활동비, 기타 교회의 재정구분 및 집행기준 마련 - 예산수립 및 집행 산정근거 마련 - 내외부 감사 정당성 판단기준 제공
인사기록카드 작성 및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인소득 과세 대상 여부 판단 자료 파악 - 과세대상 실재성 및 완전성 목적용 - 근태현황자료 구비(연월차 휴가 등)
연봉계약서 및 급여테이블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빙계약서(종교인소득신고), 또는 근로계약서(근로소득신고) - 목회자 등 연봉 및 급여기준 마련 - 합리적 급여인상안 마련(예산확보용)
지급명세서 작성 및 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회자 등 급여명세서 작성 - 과세대상 및 과세소득 범위 결정(간이세액표 기준) - 국세청 신고용 급여현황 및 세금자료 지원 - 목회자 등 4대 보험가입 현황 파악(근로소득, 종교인소득 구분) - 5년 이상 과세자료 비치 및 보관
원천징수영수부 자료 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 국세청 제출자료 구비 - 근거과세 및 이행절차의 타당성 입증자료 활용 - 5년이상 과세자료 비치 및 보관
목회자 준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종교인 소득 통장 - 청빙계약서(종교인소득신고), 또는 근로계약서(근로소득신고) - 소속 증명서 - 기타

* 김두수 회계사의 자료를 수정·보완한 것임

<표 9> 교회 모범정관 및 재정운용규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범정관은 종교인과세의 시행에 따라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재정/회계 관련 부분만 포함한 것임. * 모범정관은 어디까지나 바림직한 정관의 예시이기 때문에 각 교단과 교회의 형편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음. * 규모가 작은 교회의 경우에는 밑줄친 부분만 담은 간단한 정관도 가능함.

제1장 총칙

제00조(재정운용의 원칙) 재정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에는 다음의 원칙들을 반영하여 설정한다.

- ① **청지기적 사명:**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하나님나라 확장에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주신 재정을 청지기 관점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지혜롭게 관리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 ② **균형:** 전도/교육, 구제 및 교회운영비의 지출 비율은 목회방향에 따라 균형있게 지출되어야 한다.
- ③ **총액표시:** 모든 수입과 지출은 당해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④ **투명성:** 재정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교인들이 언제든지 접근하여 조회할 수 있는 공시절차를 두어 교인 누구든지 재정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⑤ **건전성:** 재정구조가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다음의 원칙을 준수한다.
 - 1. 교회는 차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시적인 자금 공백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 단기간 차입할 수는 있다.

- 2. 반기(또는 회계기간)별 수입 범위내에서 재정을 지출한다.

- 3. 매 회계연도별로 잉여자금이 남지 않도록 재정을 운영하며(zero base), 잉여자금이 발생하는 경우 선교 및 구제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일반운영비로 전용하지 않는다.

- ⑥ **문서화:** 재정운용에 관한 모든 기록 및 증빙은 문서로 보관되어야 한다.

- ⑦ **기능의 분리:** 재정집행을 승인하는 기능, 집행하는 기능, 기록하는 기능 및 이를 사후 감독하는 기능은 각각 분리되어야 한다.

제2장 회계 원칙

제00조(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00월 1일부터 00월 00일까지로 한다.

제00조(회계처리 방식) 교회의 회계처리는 단식부기의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00조(구분기장·회계) 교회는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생활비 등)와 그 밖의 교회 활동(목회활동비 포함)과 관련하여 지출하

는 비용을 구분하여 기장하고 회계처리를 한다.

제00조(회계서류의 보존연한 및 폐기)

- ① 각종 회계(재정)서류의 보존연한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세법상 증빙의 소멸시효 5년 규정의 적용을 받는 일부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보존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② 보존연한이 경과한 회계서류는 공동의회의 위임을 받아 당회의 결정으로 폐기할 수 있다.

제3장 예산 및 결산

제00조(예산) 교회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목회계획에 따른 예산을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산은 목회자의 사례비 예산과 목회활동비 예산, 기타 예산을 구분하여 작성하며 지출은 미리 설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예산을 근거로 집행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를 수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00조(결산 및 공시) 교회는 결산 감사종료 후 다음의 결산서 및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교인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1. 예산서
2. (예산대비) 수입/지출 결산서
3. 재산현황표(=대차대조표)
4. 부속명세서(또는 재산 및 부채 목록)
5. 운영성과표(=활동보고서)
6. 감사보고서

제00조(감사)

- ① 공동의회는 재정에 관여하지 않는 자를 감사로 선임한다.
- ② 선임된 감사는 매년 업무 및 결산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 이의 개선을 요구하고, 그 개선 결과를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 ③ 감사는 감사과정 및 결과물을 문서로 정리하여 조서로 보관한다.
- ④ 교회는 Homepage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감사의 감사보고내용을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⑤ 내부감사의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 외부전문가인 기독교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재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그 결과를 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수입

제00조(수입)

- ① 교회의 재정수입은 교인들의 자발적인 헌금, 헌물 및 기타수익으로 한다.
- ② 교회가 교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유상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실비변상 수준을 초과하는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다.

제00조(헌금의 구분과 관리)

- ① 헌금은 십일조헌금과 감사헌금, 주일헌금 등 일반헌금과 목적헌금, 절기헌금 등으로 구분하며,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신앙의 표현이어야 한다.
- ② 교회는 관할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아 교회 명의통장을 개설하여 모든 헌금을 일괄 입금 관리하여야 한다.
- ③ 교회명의로 통장은 목회자 사례비 통

장, 목회활동비 통장, 기타 교회운영비 통장 등으로 구분하여 개설하여야 한다.

④ 교회명의 통장과 목회자 개인 통장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5장 지출

제1절 사례비 및 보수

제00조(사례비, 보수)

- ① 보수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보수는 연봉과 그 밖의 제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② 교역자인 위임목사와 부교역자(부목사, 강도사, 전도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사례비'라 칭하며, 처음 청빙할 때 제시된 조건을 따른다.
- ③ 교역자와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사례 및 보수의 총액은 공동의회의 최종승인을 받아 확정하되, 개인별 사례 및 보수 일람표는 공동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 ④ 교회는 교직원들에게 책정된 보수 이외에 '교직원복지비지급기준' 등에 의하여 자녀교육비, 격려금, 복리후생과 관련한 비용 등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0조(퇴직금) 본 교회는 매 결산시 1년 이상 계속하여 시무하거나 근무한 교역자와 직원에 대하여 법정퇴직금액을 산정하여 퇴직연금에 불입하거나 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회를 개척하여 시무중인 위임목사의 경우는 교회에 기여한 공로 등을 감안하여 퇴직금 정산시 퇴직금 외에 위로금, 또는

공로금을 당회의 결의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2절 목회(활동)비

제00조(성격) 목회비는 교회발전과 목회 유익에 관련이 있는 목회자의 대내외 사역 및 교회대표자로서의 품위유지를 위해 목회자의 재량으로 사용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00조(사용목적)

- ① 목회비는 본교회의 목적과 비전에 따른 목회 및 담임목사 사역 수행에 부합되게 사용한다.
- ② 목회비는 원칙적으로 다음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1. 목회자의 목회연구 및 설교에 필요한 도서·자료의 구입과 기타 필요한 제비용의 지출
 2.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선교사·목회자·원로목사·미자립교회 교역자, 성도 및 지인 지원 등 대내외지원비와는 지출성격이 구분되는 개인적 목회사역
 3. 교회방문 교역자나 대내외 교역자, 성도, 각종 대인관계시 식대선물 등 방법의 접대
 4. 개인 목회에 도움을 준 지인들과의 교제활동
 5. 교직원복지비에서 지출하지 않은 목회자의 품위유지를 위한 의복, 기타 물품구입
 6. 교직원복지비에서 지출하지 않은 휴양이나 체력단련, 건강관리 등 목회사역에 도움이 되는 제반 활동

7. 기타 애경사 지원 등을 포함, 목회자의 목회활동영역에 부합되는 제반사역

정실, 또는 재정위원회가 별도로 기록 관리한다.

제00조(목회비의 확보)

- ① 목회비는 당회 결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최종 확정하는 예산으로 한다.
- ② 정기공동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총예비비에서 전용하여 사용하되, 당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00조(수령 및 관리) 목회비는 교회 명의의 '목회비통장'으로 입금하며, 목회비의 관리는 목회행정실에서 담당한다.

제00조(지출증빙)

- ① 목회비는 사용처에 맞게 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목회비 전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통해 증빙한다.
- ② 목회비 중 증빙이 곤란한 특수한 경우의 지출은 그 지급처를 목회행

부록 5.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서식

*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㉔) 서식은 종교활동비 총액 기재란을 추가한 내용으로 변경될 예정임

참 고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서식
------------	-----------------------

번호	서식명	관련규정	내 용
①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소득규칙 21호의2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기 위해 신청
②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소득규칙 21호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서식
③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포기)서	소득규칙 25호의3	종교인소득세액을 연말정산 하려는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제출
④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종교인소득 연말정산용)	소득규칙 37호(2)	종교인소득을 연말정산 하려는 종교인이 종교단체에 제출
⑤	소득자별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	소득규칙 25호(4)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원천징수 내역을 원천징수부에 기록하고 보관
⑥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소득규칙 23호(6)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⑦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단일소득 - 종교인소득자)	소득규칙 40호(5)	종교인소득만 있는 단일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⑧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	조특규칙 64호의2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

징수 의무자 인적 사항	상호(법인명) 사업장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업종 전화번호
-----------------------	-----------------------------	-------------------

상시 고용인원수의 계산

① 반기별 납부를 적용하려는 연도의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 고용인원 누계 (신규사업자 또는 신설된 종교단체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매월 말일 현재의 고용인원 누계를 적용합니다)		② 평균인원수 (① / 월수)	
--	--	---------------------	--

근로소득 지급 및 징수 현황

(일용근로 소득은 제외)

(단위: 원)

월	인원	적용연도		직전연도		비고
		총지급액	소득세징수액	총지급액	소득세징수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명					

년 월부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 "② 평균인원수"란에는 평균인원수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가 있을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종교단체의 경우 평균인원수를 계산할 때에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의 수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2. "적용연도"의 총지급액(비과세포함)은 신청월의 전월까지 지급분을 기재합니다.
 ※ "적용연도"란은 6월에 반기별납부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는 12월에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작성합니다.

[서식②]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7. 3. 10.> [시행일:2018. 1. 1.] 종교인소득에 관련된 규정 (10쪽중제쪽)

①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년 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③ 지급연월	년 월
원천징수 의무자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단위과세 여부	여, 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①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미달, 일부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개인 (거주·비거주자)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연말정산	일용근로	A03							
			합계	A04							
			분납신청	A05							
		납부금액	A06								
	가감계	A10									
	퇴직소득	연금계좌	A21								
		그 외	A22								
		가감계	A20								
	사업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종교인 소득	연금계좌	A41							
			매월징수	A43							
		연말정산	A44								
		그 외	A42								
	연금소득	가감계	A40								
		연금계좌	A48								
		공적연금(매월)	A45								
연말정산		A46									
가감계		A47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저축해지 추정세액 등	A69										
비거주자 양도소득	A70										
법인	내·외국법인원천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 합 계		A99									

② 환급세액 조정 (단위: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⑬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⑮+⑯+ ⑰)	⑰ 당월조정 환급세액 계	⑱ 차월이월 환급세액 (⑬-⑰)	⑲ 환급 신청액
⑫ 전월 미환급세액	⑬ 기환급 신청세액	⑭ 차감잔액 (⑫-⑬)	⑮ 일반 환급	⑯ 신탁재산 (금융 회사 등)	⑰ 그 밖의 환급 세액 금융 회사 등 합병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 하며, 위 내용을 충실히 검토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고서 부표 등 작성 여부 부표(4~5쪽) 환급(7쪽~9쪽) 승계명세(10쪽)		
	세무대리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국제환급금 계좌신고 예입처 예금종류 계좌번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포기)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원천 징수 의무자	① 종교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⑥ 종교단체 소재지			(전화번호:)

신 청 (포 기) 내 용

⑨ 연말정산을 하고자 하는 종교인소득분	년도 소득분부터						
⑩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자 하는 종교인소득분	년도 소득분부터		최초로 연말정산한 과 세 기 간			년도	
세 무 대 리 인	성 명				전 화 번 호		
	관 리 번 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4제2항에 따라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 신청(포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유의사항

※ 이 신청(포기)서는 최초로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을 하려는(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제출 하여야 합니다.

구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II.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보험료		전액	
	연금보험료 계				
III. 소득	법정기부금	기부금이월액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기부금이월액		작성방법 참조	
	지정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이월액			
	기부금이월분(합계)				
공제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		납입금액		불입액 40%와 72만원
	투자조합 출자 등(2017년 이전에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조합 등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벤처 등			
투자조합 출자 등 계					

구분	세액감면·공제명세		세액감면·공제 명세					
	공 제 종 류		명세	한도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율	공제세액	
IV. 세액감면 및 공제	연금계좌	과학기술인공제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12% 또는 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납입금액				
		연금저축		납입금액				
		연금계좌 계						
	특별세액공제	기부금	정치자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100/110
			기부금	10만원 초과	기부금액			
			법정기부금		기부금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기부금액			
			지정기부금(종교단체외)		기부금액			
			지정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액			
			기부금 계					
	외국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					
			납세액(외화)					
			납세액(원화)			-		
납세국명					납부일			
신청서제출일					국외 종교단체명 등			
종사기간					직책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45조의3 제2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VI. 추가 제출 서류

1. 종(전) 근무지 명세	종(전)종교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종(전) 종교인소득 총액	종(전)결정세액	종(전)근무지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2. 연금·저축 세액 공제명세서 제출 여부 (○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 ※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그 밖의 추가 제출 서류	① 기부금명세서 (), ②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유의사항

1. 종교관련종사자가 종(전)근무지의 종교인소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공제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세액"란은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 적지 아니하고 공란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식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4)] <신설 2017. 3. 10.>

소득자별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4 관련)

징수 의무자	① 종교단체명		② 사업자등록 번호(고유번호)	-	가족 사항	⑦ 배우자	유·무	⑪ 70세 이상	명
	③ 소재지					부양가족	⑧ 20세 이하	명	⑫ 장애인
소득자	④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		⑨ 60세 이상	명	⑬ 부녀자	여·부
	⑥ 주소					⑩ 신고서제출일	. . .	⑭ 한부모	여·부
⑮ 월 별	⑯ 지급일	⑰ 지급액 (비과세소득 제외)	원천징수세액		⑳ 월 별	㉑ 지급일	㉒ 지급액 (비과세소득 제외)	원천징수세액	
			㉓ 소득세	㉔ 지방소득세				㉕ 소득세	㉖ 지방소득세
1월분	. . .				7월분	. . .			
2월분	. . .				8월분	. . .			
3월분	. . .				9월분	. . .			
4월분	. . .				10월분	. . .			
5월분	. . .				11월분	. . .			
6월분	. . .				12월분	. . .			
					계				
독 종교인소득(=⑰+독)			㉚ 종교인소득(=㉓)		소득금액의 계산			독 소득금액(㉖-㉗)	
					㉗ 필요경비				
독 종교인소득 소득금액 (독)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인적공제	기본공제	㉘ 본인	㉜ 종합소득공제계		㉙ 결정세액				
		㉙ 배우자	㉝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㉚ 부양가족	㉞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추가공제	㉛ 경로우대	㉟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초과액		㉚ 종(전)근무지에서 원천징수한 세액				
		㉜ 장애인	㊱ 종합소득과세표준						
		㉝ 부녀자	㊲ 산출세액						
	㉞ 한부모가족	㊳ 자녀세액공제		㉛ 주(현)근무지에서 원천징수한 세액					
		㊴ 연금계좌 세액공제							
		㊵ 기부금세액공제							
㉟ 연금보험료공제		㊶ 표준세액공제		㉜ 차감원천징수세액					
기부금 (이월분)	㊷ 지정기부금	㊸ 외국납부세액공제							㉝ 차감환급세액
	㊹ 지정기부금 외								

[서식⑥]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6)] <신설 2017. 3. 10.>

관리번호	
① 귀속연도	년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소득자 구분		
거주구분	거주자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② 종교단체명		③ 대표자(성명)		④ 사업자등록(고유)번호	
소득자	⑤ 주민(법인)등록번호		⑥ 소재지(주소)			
종교인 소득	⑦ 성명	⑧ 주민등록번호				
	⑨ 주소					
종교인 소득 구분	⑩ 발생처구분	⑪ 종교단체명	⑫ 사업자등록(고유)번호			⑬ 발생기간(연·월·일)
	주(현)종(전)		-	-	-	~
소득금액	⑮ 종교인소득(⑭)		㉑ 필요경비		㉒ 소득금액(⑮-㉑)	

⑮ 종교인소득 소득금액 (㉒)		구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인적공제	기본공제	⑲ 본인	㉓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	㉔ 결정세액				
		독 배우자	㉕ 종합소득과세표준		가납부세액	㉖ 중(전)근무지		
		독 부양가족(명)	㉗ 산출세액			㉘ 주(현)근무지		
	추가공제	독 경로우대(명)	㉙ 공제대상자녀(명) 6세 이하(명)	㉚ 차감 납부할 세액				
		독 장애인(명)			출산·입양자(명)			
		독 부녀자	㉛ 연금계좌 세액공제					
원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	㉜ 정치자금	위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확기부금(이월분)	세액공제	㉝ 우리사주조합 지정						
독 종합소득공제 계		㉞ 표준세액공제						
독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		㉟ 외국납부세액공제						
⑳ 투자조합 출자등 소득공제		㊱						

㉓ 인적공제자 명세(해당 소득자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부양 등으로 공제금액 계산명세가 있는 자만 적습니다. 다만, 본인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			-		
		-			-		
		-			-		

※ 관계코드: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자녀, 입양자)=4, 직계비속(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5, 형제자매=6, 수급자=7(코드1~6제외), 위탁아동=8 *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작성방법

-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 ISO국가코드: 국제전화페이지→국제정보→국제조세정보→국제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징수의무자"란의 "⑤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⑭ 지급액"란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비과세 종교인소득을 제외하고 적습니다.
- "㉓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란은 종교인소득 소득·세액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2)) 제2쪽의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항목의 "조합 등"란의 공제액이 2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㉚ 차감 납부할 세액"란이 소액 부정수(1천원 미만)를 말함에 해당 하는 경우 "0"으로 적습니다.
-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은 버립니다.

**(년 귀속)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관리번호	-
------	---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역	거주지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자우편주소
	⑤ 주소지 전화번호	⑥ 휴대전화번호

⑦ 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❷ 환급금 계좌신고 금융기관/체신관서명 계좌번호

❸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
⑳ 총수입금액: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종교인소득 중 과세대상 소득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㉑ 필요경비: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필요경비 금액을 적습니다.	
㉒ 종합소득금액:	㉑ - ㉑	
㉓ 소득공제:	㉓~㉓의 공제금액 합계에서 ㉓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소득공제명세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인적공제		
	관계성	성 명	내외국인코드	주 민 등 록 번 호	구 분	인원	금 액
소득공제명세					기본공제	㉔ 본 인	
						㉕ 배 우 자	
						㉖ 부 양 가 족	
					추가공제	㉗ 경 로 우 대 자	
						㉘ 장 애 인	
						㉙ 부 녀 자	
					㉚ 한 부 모 가 족		
㉛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기부금 지출액 중 공제액을 적습니다.						
㉜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적습니다.						
㉝ 개인연금저축공제: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㉞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㉟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초과액을 적습니다.						
㊱ 과세표준:	㉛ - ㉛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㊲ 세율: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세율을 적습니다.						
㊳ 산출세액:	㊱ × ㊲ - 누진공제액(5쪽 작성방법 참고)						
㊴ 세액공제:	세액공제명세(㊵~㊷)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세액공제명세	㊵	기본공제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 2명 이하: 1명당 15만원, 자녀 2명 초과: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명
	㊶	6세 이하 자녀(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2명: 15만원, 2명초과: 15만원 + 2명 초과 1명당 15만원	명
	㊷	출산·입양 자녀 ※ 출산·입양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	명
	㊸ 연금계좌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 대상금액과 공제액을 적습니다.	공제 대상금액

구 분					금 액	
세 액 공 제 명 세	㉓ 기부금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대상금액과 공제액을 적습니다.	법정기부금공제 대상금액				
		지정기부금공제 대상금액				
		우리시주조합기부금공제 대상금액				
	㉔ 표준세액공제: 7만원(㉕~㉗의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㉘ 전자신고세액공제: 납세자가 전자신고 방법에 의하여 직접 신고하는 경우 2만원을 공제합니다.					
㉙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㉚ 외국납부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㉛ 결정세액: ㉙-㉚("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㉜ 가산세액: 무신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액명세(㉞~㉟)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가 산 세 액 계 산 명 세	구 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㉞ 무 신고	부 정 무 신 고	무신고납부세액		40/100	
		일 반 무 신 고	무신고납부세액		20/100	
	㉟ 과 소 신고	부 정 과 소 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일 반 과 소 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㊱ 납부(환급)불성실	미 납 일 수	()		3/10,000		
미 납 부 (환 급) 세 액						
㊲ 총결정세액: ㉛+㉜						
기납부 세액	㊳ 원천징수세액[지급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㊴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㊲-㊳						

④ 지방소득세액의 계산

㊵ 과세표준: 종합소득세의 ㊴ 과세표준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㊶ 세율: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세율을 적습니다.	
㊷ 산출세액: ㊵×㊶-누진공제액(4쪽 작성방법 참고)	
㊸ 세액공제·감면: ㊷×10%	
㊹ 가산세액: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㊺ 기 납부한 특별징수세액: ㊷×10%	
㊻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㊷-㊸+㊹-㊺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및 「지방세법」 제95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정하며,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 및 기부금납입영수증 각 1부(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이 신고서는 5월 31일까지 세무서로 우송해야 합니다.
------	--

관리번호 ()년 귀속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 기한후() 신청서

※ 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 ② 가구원, ④ 전세금 명세, ⑤ 총급여액 등 작성 란을 초과할 경우 3·4쪽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I·II)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① 신청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④ 휴대전화			⑤ 유선전화			⑥ 전자우편	@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등 동거가족을 모두 적습니다.

② 가구원	⑦ 관계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⑦ 관계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			-
			-			-

③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Q1.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1. 2.~ .12.31.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Q2. (Q1에서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신청자는 40세 이상(.12.31 이전 출생)입니까?	예 [] 아니오 []								
		Q3.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은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귀하는 이 조건을 충족합니까?	예 [] 아니오 []								
	<table border="1"> <tr> <td>가구원 구성</td> <td>단독가구</td> <td>홀벌이 가구</td> <td>맞벌이 가구</td> </tr> <tr> <td>총소득기준금액 (미만)</td> <td>1천 300만원</td> <td>2천 100만원</td> <td>2천 500만원</td> </tr> </table>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1천 300만원	2천 100만원	2천 500만원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1천 300만원	2천 100만원	2천 500만원							
자녀장려금	Q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18세 미만(. 1. 2.~ .12.31.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몇 명 있습니까?	[] 명									
	Q나.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은 4천만원 미만입니까?	예 [] 아니오 []									
	Q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자녀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1일 ~ 3월 31일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예 [] 아니오 []									
공통	QA. 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가구원(②)이 소유한 토지·건물·주택·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입니까?	예 [] 아니오 []									
	QB.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그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입니까?	예 [] 아니오 []									

* 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가구원(②)이 임차한 주택·상가 등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주택의 전세금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간주 전세금')입니다.

④ 전세금 명세	⑩ 임차인 성명	⑪ 임대인 성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⑫ 소재지	⑬ 종류 주택 상가 등		⑭ 전세금 (임차보증금) 원	⑮ 월세 원	⑯ 무상임차 []
					[]	[]			

⑤ 총급여액 등	근로소득	⑰ 소득자 신청자 [] 배우자 []		⑱ 상호	⑲ 사업자등록번호		⑳ 근로소득(총급여액) 원		
	사업소득	⑳ 소득자 신청자 [] 배우자 []	㉑ 원천징수 여부 여 [] 부 []	㉒ 상호	㉓ 사업자 등록번호	㉔ 총수입 금액 원	㉕ 업종 ㉖ 업종코드	㉗ 조정률 %	㉘ 사업소득 원
		㉙ 합계 (부부 합산 연간 총급여액 등) 원							

⑥ 신청금액 계산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① 산정금액	② 재산 1억원 이상	총급여액 등으로 산정표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기재	원	원
		③ 기한 후 신청	(재산합계 1억원 미만) ① × 10%	원	원
	④ 신청금액(①-②-③)	(재산합계 1억원 이상) (①-②) × 10%	원	원	
④ 신청금액(①-②-③)		산정금액에서 감액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	원	원	

* 자녀장려금은 신청금액(④)에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은 자녀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

⑦ 수령계좌 신고 ⑧ 금융회사등 ⑨ 계좌번호

◇ 금융거래정보 조회 안내: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 및 제100조의30에 따라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사실대로 작성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및 제100조의30에 따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 (해당란에 √)	1. 소득 증거자료: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 (국세청 고시 서식 참조) 등 []	수수료 없음
	2. 재산 증거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확인서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청산금 납입영수증 등 사본 []	

작성 방법

㉒ 가구원

1. 전년도 12.31. 현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아래 표 참조)을 모두 적습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을 말하며,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2. ㉑ 관계란에는 신청자와의 관계[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 기타]를 적습니다.

㉓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Q1. 전년도 12.31. 현재 신청자에게 배우자가 있거나,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자녀가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자녀가 연도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치유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동거입양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 18세 미만의 형제자매 또는 손자녀
- ※부양자녀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2. 전년도 12.31. 현재 신청자에게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Q3. 전년도 연간 총소득합계액(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20~90%, 3쪽 참조),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하여(다만, 비과세 소득 제외) 계산하며, 각 가구별 총소득 기준금액(단독가구 1천 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2천 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천 500만원 미만)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구가 아닌 경우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전년도)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3쪽 참조).

[자녀장려금]

Q가. 전년도 12.31. 현재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18세 미만 부양자녀수를 기재합니다.(위 근로장려금 Q1.의 설명 참조)

Q나. 전년도 연간 총소득(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20~90%, 3쪽 참조)],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하며, 총소득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다. 자녀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1일 ~ 3월 31일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공통]

QA. 신청자와 ㉒ 가구원란에 적은 사람이 전년도 6. 1.에 보유한 주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재산가액에는 토지·건물·주택, 승용자동차(영업용자동차, 승합차, 화물차를 제외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가구원 개인별 5백만 원 이상만 합산함),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가구원 개인별 5백만 원 이상만 합산함), 분양권, 입주권, 골프회원권 등 취득세 과세대상인 회원권 가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 이 경우, 재산가액 산정 시 대출금 등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㉔ 전세금 명세

1. 신청자와 ㉒ 가구원란에 적은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전년도 6. 1. 현재 타인의 주택이나 상가 등을 임차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 건물별로 적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공동 명의일 경우에는 대표 1인만 작성합니다.

2. 상가 등(주택 제외)을 임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다만, 전세(임대차)계약서 상 전세금이 간주전세금 보다 적은 경우 [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 그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㉕ 총급여액 등

1. "특 근로소득(총급여액)"란은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며, "특 사업소득"란은 총 총수입금액에 제3쪽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아래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총급여액 등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㉓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에는 포함(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 비과세소득
- 직계존비속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 소득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 처분된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다만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은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제외)

2.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와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 등 소득 증거자료는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3. ㉒ 원천징수 여부란은 원천징수한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원천징수한 봉사료 사업소득을 말하며, 의료보건용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한국교회법학회

KOREA CHURCH LAW ASSOCIATION

www.churchnlaw.co.kr / 1600-9830

■ 한국교회법학회의 목적 및 활동 방향

한국교회법학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교회법을 통해 교회내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며, 교회사건 재판에 대한 교리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교회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 교회법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 교회법 학회지, 교회법 관련 학술서 발간, 연구용역 수행
- 주요 교단 헌법 및 지교회 정관 연구, 교단 재판기관 판결, 결정사례 연구
- 교회, 기독교 관련 법원 판결 연구
- 종교적 이슈에 대한 각종 법적 현안 대응
- 각 교단 교육기관, 신학교에 교회법 과정 개정 및 교회법 교육
- 교회법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 교회법 관련서적 발간
- 종교인과세 자문(법무법인 솔론, 세무법인 삼도와 협력)

■ 연혁

- 학회 창립: 2013년 4월 4일, 초대 이사장 겸 학회장 서헌제 교수 취임
- 사단법인 설립: 2013년 8월 21 법무부장관(2013-153호)
- 학회지 『교회와 법』 창간호, 제2권 발간
- 『법창에 비친 교회』, 『한국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법』 발간
- 제2대 전주남 이사장(새서울교회 담임목사) 취임: 2015.6.21,
- 창립 이래 총 20회 학술세미나 개최

■ 후원약정

- *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802-344958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
후원계좌로 입금하신 경우에는 학회사무국(010-5322-4217)으로 연락요망.

■ 한국교회법학회 홈페이지

* 네이버에서 '교회법학회'를 치시면 학회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 온라인강좌 | 마이페이지 | 사이트맵

학회소개 | 학회지 | 교회법 자료 | 교회법/분쟁상담 | 교계동경

공지사항

- > 한국교회법 학회 출산회 임원 ...
- > 제15회 학술세미나를 마쳤습...

1600-9830
교회분쟁콜센터
후원: 기업은행 514-032422-04-014 (사)한국교회법학회

동영상 칼럼

한국교회법...
한국교회의
공의회...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의 공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 그러므로 애물을 계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 나거든 애물을 계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청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애물을 드리라. *
-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마태복음 5:23-24 -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분쟁사례 **분쟁상담신청** **논문투고** **자주하는질문**

포토 갤러리

자료실

- > 각종 문서 읽기 프로그램입니다.
- > 근로자수당비용지원 기준 및 절차
- >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기준 및 절차
- >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지원기준 및 절차

학회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고객센터

한국교회법학회 | 학회장 : 서형제 | 개인정보관리자 : 전주남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81-10 복산2차 607호
대표전화 : 1600-9830 | 교회분쟁콜센터 : 02-6335-0101 | 이메일 : master@churchinlaw.co.kr
COPYRIGHT © cratos.biz ALL RIGHTS RESERVED.